

<p>• 주민의견 청취결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양재동 24 일대 상업지역 추가지정 요망(미반영) 서초동 1365-16 일대 상업지역 추가지정 요망(미반영) 서초동 1360-45 일대 상업지역 추가지정 요망(미반영)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본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의 건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서초구 양재지구 중심지역인 양재동 12 일대 및 서초동 1366 일대 43,230㎡의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아울러 같은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,</p> <p>○이 지역 양재 중심지구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상업지역으로 변경은 타당한 변경안으로 사료되며, 특히 이 지역에 대한 도시미관과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도시설계지구 지정은 인접지역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제출한 지구지정안에 동의 의견임.</p> <p>5. 심사결과</p> <p>보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4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위치 : 서초구 방배동 444-4 일대</p> <p>○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용도지역변경 : 일반주거지역→일반상업지역 (25,560㎡) • 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(25,560㎡) • 주민의견 청취결과 : 없음. - 방배2동 452-1 일대 상업지역 추가 지정 요망(미반영)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	의안 번호	64	<p>○서초구 방배동 444-4 일대 남현지구 중심지역에 대한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결정안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합당하여 시의 변경결정안에 동의 의견이며,</p> <p>○또 이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과 함께 남현지구 중심지를 중심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서 타당한 지정안으로 사료됨.</p> <p>5. 심사결과</p> <p>보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5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위치 : 서초구 방배동 3000 일대</p> <p>○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용도지역변경 : 일반주거지역→일반상업지역 (39,840㎡) • 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(39,840㎡) • 주민의견 청취결과 : 없음.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서초구 방배동 3000 일대 39,840㎡에 대한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이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은</p> <p>○시 및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던 지역이며, 이 지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도시미관과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록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</p> <p>○시에서 제출한 안대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변경결정 및 지구지정안에 동의 의견임.</p> <p>5. 심사결과</p>	의안 번호	65
의안 번호	64				
의안 번호	65				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bottom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7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 ○위치 : 강남구 청담동 47 일대 ○내용 · 용도지역변경 : 일반주거지역→준주거지역 (44,300㎡) · 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(44,300㎡) · 주민의견 청취결과 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○강남구 청담동 47 일대 44,300㎡에 대한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은 이 지역을 자치구에서 청담생활권 중심지로 정해진 지역으로, ○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</p> <p>5. 심사결과 보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8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 ○위치 : 강남구 대치동 937 일대 ○내용 · 용도지역변경 : 일반주거지역→준주거지역 (44,200㎡)</p>	의안 번호	67	의안 번호	6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(44,200㎡) · 주민의견 청취결과 : 없음.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○본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안은 강남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대치동 937 일대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도가 높은 이 지역을 대치생활권 중심지로 정하고, ○이 지역을 중심기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,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은 이 지역 개발을 위한 타당한 변경안으로 사료되어 시가 제출한 안에 각각 동의의 건임.</p> <p>5. 심사결과 보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9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 ○위치 : 강남구 개포동 158 일대 ○내용 · 용도지역변경 : 일반주거지역→준주거지역 (16,700㎡) · 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(16,700㎡) · 주민의견 청취결과 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○강남구 개포동 158 일대 16,700㎡의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강남구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 지역을 개포생활권 중심지로 정하고 ○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, 아울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은 이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한 지역변경이며 지구지정안으로 사료되어, ○시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각각 동의의 건임.</p>	의안 번호	69
의안 번호	67						
의안 번호	68						
의안 번호	69						